

更生保護의 理念과 實踐

金 箕 斗*

- 一. 更生保護의 概念
- 二. 更生保護의 理念
- 三. 更生保護의 實踐
 1. 出所前의 準備
 2. 國民의 協助
 3. 調查研究의 實施
- 四. 結 語

一. 更生保護의 概念

「更生保護」라는 말이 우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기 始作한 것은 1961年 9月 30日 法律 第 730 號로 公布된 「更生保護法」에서 비롯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法은 當時의 法令整理 政策에 따라 從來의 「朝鮮司法保護事業令」등을 廢棄하면서 이에 代替하는 法으로 制定된 것이었는데 바로 이 事實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更生保護」라는 말은 從來의 司法保護에 該當하는 것이며 또한 英美의 After-care 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更生保護」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第二次世界大戰이 終戰된 後 日本에서 이 말이 사용되면서부터였다고 하겠다. 日本에서는 敗戰後 美國의 勢力下에 들어서면서 美國에서 크게 發達한 Probation 制度和 Parole 制度를 本格的으로 導入하는 일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이 때 執行猶豫者와 假釋放者에게 施行하던 「保護觀察」과 從來의 「司法保護」에 관한 것을 합쳐 「更生保護」라는 概念 속에 統一하면서 새로운 法令을 制定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犯罪者豫防更生法」(1949年), 「更生緊急保護法」(1950年), 「保護司法」(1950年), 그리고 1953年과 1954年 사이의 二次에 걸친 刑法 一部改正과 이에 따른 「執行猶豫者保護觀察法」 등이다.

이리하여 日本에서는 「更生保護」라고 하면 美國의 Probation, Parole, After-care 를 함께 包括하는 概念으로 成立하였다. 이러한 意味에서 日本의 小野清一郎博士는 「更生保護는 司法保護가 飛躍적으로 擴大·強化된 概念」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¹⁾. 그리고 이것은 Rehabili-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法學博士

(1) 小野清一郎, 更生保護의 理論(同著 刑罰의 本質에 いて其他, 1955, 所收), p. 536

tation 이라고 하는 世界的으로 流行하는 刑事思潮에 積極的으로 呼應하는 政策의 表現이라고 說明되고 있다⁽²⁾.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更生保護라고 하는 경우는 단순히 從來의 After-care 를 意味하는데 不過하다. 즉 우리 나라 更生保護法 第3條는 「本法에서 更生保護라 함은 第1條 各號에 該當한 者에 對하여 善行을 獎勵하고 環境을 造成시켜 再犯을 防止하는 觀察保護와 親族·緣故者 等으로부터 援助를 얻을 수 없는 境遇에 自活을 위한 生業의 指導, 就業을 保護·斡旋하는 等의 直接保護를 賦與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更生保護法 第1條에서 列擧한 保護對象者는 自由刑의 終了 또는 執行免除를 받은 者, 假釋放中에 있는 者, 起訴猶豫·宣告猶豫·執行猶豫된 者, 少年院에서의 退院 또는 假退院된 者 등이 다.(筆者는 以下에서 이들을 모두 「出所者」란 말로 統一하여 부르기로 한다.)

우리 나라의 更生保護는 이들 出所者 중에서 保護를 要求하는 사람들에게만 任意的으로 保護措置를 베푸는 것에 不過하기 때문에 이를 「任意的更生保護(voluntary after-care)」라고 부를 수도 있다⁽³⁾.

本稿에서는 이러한 좁은 意味의 任意的更生保護를 中心으로 해서 그 理念과 實踐에 관하여 一般的인 考察을 하여보고자 한다.

二. 更生保護의 理念

社會로부터 隔離된 矯正施設에서 相當한 期間 拘禁되었다가 다시 社會로 釋放되어 나오는 「出所者」(discharged prisoners) 中에는 다른 사람의 援助가 없는 衣食住의 基本的欲求도 充足시킬 수 없고 社會에 適應하여 正常的인 社會生活을 繼續할 수 없는 사람들이 許多하다. 이들에 대하여 必要한 保護와 援助를 베푸는 일은 分明히 「人道主義」(Humanism)의 必然的인 것이다. 아무리 應報刑論에 透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刑罰의 執行이 因果應報의 論理的 必然임을 強調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刑의 執行을 終了 또는 免除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社會에 다시 進出하려는 出所者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適切한 更生保護를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인 바, 이것이 人間을 救濟하고 保護하려는 人間愛, 즉 「휴머니즘」의 必然임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

그러나 更生保護事業은 單純히 罹災民에게 救護를 提供하는 것과 같은 慈善의 하나로만

(2) 小川太郎, 更生保護法(1957), 26.

(3) 日本이나 美·英에서 보는 것처럼 執行猶豫者 또는 假釋放者로 하여금 반드시 更生保護所의 保護觀察를 받게 하고, 要求된 遵守事項에 違反하는 行爲가 있을 때는 強制措置를 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強制的 更生保護」(Compulsory after-care)라 부르기도 한다. United Kingdom, *The Organization of After-care*,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63); 小川太郎, 更生保護法(1957)

(4) 小野清一郎, 前掲書, p. 541 참조

생각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更生保護事業은 刑事政策的인 要請이고, 共同社會의 責任이라는 事實을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更生保護問題에 대한 참된 科學的認識은 이때에 비로소 可能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更生保護는 再犯의 危險性이 높은 出所者들을 適切히 保護해 주어서 그들의 再犯으로부터 社會를 保護해야 한다는 點에서 그 必要性을 認識할 때 비로소 問題의 科學的 認識이 成立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出所者들의 特殊한 條件을 올바르게 理解할 때 곧 깨달을 수 있는 事實이다.

出所者들 중에 保護를 要하는 사람들의 條件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그들은 刑을 치루고 나왔지만, 社會는 「教化된 새로운 착한 한 사람」으로 받아 주지 않고 「前科者」로만 보고, 冷待・不信・忌避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社會的異端者」로서 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는 事實이다. 이러한 事實은 참된 現實的인 意味에서 볼 때 刑罰은 出所者가 釋放되어 다시 外部世界에 들어 실 때에 始作되며, 이것은 生存에 直結되는 深刻한 問題라고 말할 수 있는 바 事實은 우리 나라 現實에선 出所者들 一般에게 共通妥當한 것으로서 重大한 問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社會에 再出發하려는 出所者들에 대하여 現實의 社會가 그렇게 받아주려는 準備가 되어 있지 않은 事實을 들이 Barnes 와 Teeters 는 「社會遲滯」(Community lag)라는 말로 表現하였다⁽⁵⁾.

다른 하나는 出所者들 自身の 心理를 分析해 보면 그들은 社會實情에 맞지 않는 것이 普通이다. 이는 長期囚였던 경우에 더욱 甚하다. 그들은 數年間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가 들어올 때의 社會情勢만을 記憶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中心으로 여러 가지로 夢想하게 된다. 그러나 變化가 없고 單調로운 行刑施設 안에서 갇혀 여러 가지 夢想은 문밖을 나서자마자 곧 허무러져 버린다. 왜냐하면 外部社會는 이미 다른 모습으로 變化해 있고 急速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自身을 잃고 劣等感과 不安感에 빠져 스스로 「異端者」로 느끼게 되어 社會適應이 極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學者들은 出所者들의 이러한 心理的遲滯가 더 致命的인 것임을 強調하고 있다⁽⁶⁾.

이상과 같이 社會的 心理的으로 나약한 出所者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再犯할 危險性이 아주 높은 것이다. 이는 出所者中 再犯하는 사람에 관한 統計에서 出所後 60日~90日 사이에 가장 많은 數가 分布된다는 事實에 의하여 잘 說明되고 있다. 學者들은 이 3個月 동안을 「累犯孵卵期間」이라고 부르거니와, 이 期間이 出所者의 社會復歸成功 與否에 있어 決定的

(5) H.E. Barnes and N.K. Teeters, *New Horizons in Criminology*, 3rd ed. (1959), p. 543.

(6) 拘禁心理學(Psychology of Imprisonment)이라는 題目 밑에서 이에 관해 잘 說明하는 것으로 M. Grünhut, *Penal Reform*(1948), pp. 164—179 참조.

인 時期(the crucial period of his return to the community)⁽⁷⁾이라는 事實은 오늘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更生保護는 바로 이 決定的인 時期에 適切한 保護措置으로써 出所者의 再犯을 막는 것을 그 主된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고 解釋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更生保護의 價値를 옳게 認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우리는 更生保護事業이 單純한 慈善으로서보다도 刑事政策을 效果的으로 樹立·施行하고자 하는 國家의 責任事業으로 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을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⁸⁾. 그리고 우리가 이를 認定한다면 更生保護라는 것은 단순히 「生存에 必要한 程度의 援助」(survival needs)를 提供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出所者가 社會에 完全復歸(Rehabilitation)할 수 있도록 하는 程度의 物質的·精神的援助를 提供하는 것으로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는 이러한 更生保護事業은 國家의 直接的인 責任下에 運用되는 制度로 發展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1960年의 「犯罪豫防 및 犯罪者處遇에 관한 國際聯合會議」(U.N.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以下에선 U.N. 犯罪會議라고 略하여 부르기로 한다—에서 更生保護(After-care)의 論題에 관한 討議의 結果로 採擇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決議文, 즉

「After-care는 社會復歸化過程(rehabilitative process)의 一部로서 適切한 After-care의 諸方法을 組織化하게끔 保障·育成하는 것은 國家의 第一次의 責務(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state)이다⁽⁹⁾.」

라고 한 決議文은 注目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從來 우리 나라에서는 行刑施設內에서의 處遇問題에만 關心과 豫算을 集中할 뿐이고, 出所者들에 對하여 그들의 그 決定的 時期에 그들이 行刑施設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社會까지 건너야 할 깊은 강물에 빠지지 않고 無事히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일을 等閑히 해왔었는데 이는 刑事政策의 으로 큰 失策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要컨대 우리는 「監獄과 社會를 잇는 다리」(bridge between prison and community)인 更生保護事業의 刑事政策의 意義를 깊이 再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三. 更生保護의 實踐

그러면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更生保護의 理念을 效果的으로 實踐하기 爲해서는 어떠한 方法이 採擇되어야 할 것인가? 筆者는 그 效果的인 實踐方案에 관하여 아래에서 몇 가

(7) *ibid.*, p. 316

(8) Pauline Morris, *Prison After-care: Charity or Public Responsibility* (London: Fabian Society, 1960) 참조.

(9) 犯罪豫防 및 犯罪者處遇에 관한 國際會議, 1960, 第6部 結論과 勸告 第8條

지 說明해 보고자 한다.

1. 出所前의 準備

일찍이 1872年 London 國際刑法監獄會議에서는 第 20 議題로서 「出所者援助의 最善方法은 무엇인가?」를 採擇하여 討議한 바 있다. 이에 決議文으로 採擇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出所者保護團體에서 행하여야 할 出所者에 對한 援助는 監獄 안에서부터 始作되어야 하며, 監獄側은 그 團體의 從事者에게 受刑者와 親近하게 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여야 한다는 데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라는 것이었다.

이 決議文이 잘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效率的인 更生保護活動을 하기 위해서는 更生保護所의 職員이 行刑施設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行刑施設 안에 들어가서 出所後에 保護를 要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出所後의 갈 길을 解決하기 爲하여 미리 相議하는 것이 更生保護의 方法中에 가장 重要한 方法인 것이다. 受刑者들 가운데에는 出所後에 갈 길이 漠漠하고 生計의 保障을 解決할 方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自暴自棄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자기를 도와 줄 更生保護機構 같은 것이 있는지 어떤지조차 모르고, 또한 그러한 기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연 어느 程度로 자기를 도와 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리 更生保護所라는 것이 어떠한 組織 위에서 어떠한 方法으로 援助活動을 하고 있는지를 納得시켜 주면 이들은 絶望아닌 希望을 가져보려고 努力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社會에 나가더라도 犯罪的인 方法으로 生計를 이어가는 길만을 알고 있던 受刑者들에게 合法的인 生計方途를 찾는 意欲을 북돋아 주는 效果도 거둘 것이다. 이들은 拘禁될 當時의 社會條件만을 記憶하고 있는 것이므로 스스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거나 새로운 社會의 變化에 適應한 再生의 길을 찾는 能力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更生保護機構에서는 이러한 出所後에 保護를 要하는 受刑者들의 名單을 行刑當局으로부터 通報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들과의 接觸을 언제부터 始作하는 것이 좋은가? 이에 對하여는 Barnes 와 Teeters가 適切한 對答을 記述하고 있다. 즉

「受刑者는 社會適應計劃을 더 빨리 始作하면 할수록 더 많이 成功할 機會가 있다.」
(The sooner the prisoner starts on plan of readjustment, the more chance there is it will succeed.)⁽¹⁰⁾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가 出所者에게 單純히 「生存에 必要한 것」(survival needs)을 援助해 주는 것을 更生保

(10) Barnes and Teeters, *op. cit.*, p. 550.

護라 말하지 않고 就業·家庭發見 등으로 社會에 適應·復歸하게끔 援助하는 것이 更生保護라고 말한다면 出所前에 그 準備을 위한 接觸이 20日 또는 30日 前에 始作되도록 하는 것은 適當하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런데 行刑運營指針書에 의하면 出所前 20日~30日에 行刑施設로부터 名單의 通報를 받도록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러한 運營指針은 出所者에게 衣服이나 旅費를 提供하고 一時的인 宿宜의 便宜를 주는 程度의 更生保護를 하는 것에 不遇하다 하겠다.

여기서 更生保護(After-care)分野에 있어 世界에서 가장 發達되었고 또 가장 오랜 傳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英國에서 찾아 볼 수 있는 注目할 만한 事實을 하나 紹介하면, 이 나라에서는 更生保護機構의 活動 가운데 그 4분의 1이 行刑施設內에서의 活動에 傾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二大刑務所에는 更生保護所에서 派遣된 專擔役員이 1名씩 配置되어 있다고 한다⁽¹¹⁾.

그런데 最近의 몇몇 先進國家에서는 行刑施設 自體에서 받아 하는 「釋放前 特別處遇制度」(pre-release treatment)를 發展시키고 있다. 즉 釋放期에 가까운 受刑者들에 對하여 行刑施設의 一部 또는 獨立된 어떤 施設에 收容하여 半自由를 許容하는 가운데서 社會復歸를 直接的으로 準備시키는 制度가 그것이다. 그것이 監獄과 社會와의 橋樑의 必要性에 대한 強力한 認識의 結果라 함은 再論할 必要도 없는 일이거나와 이러한 釋放前 特別處遇制度는 일찍이 行刑累進制의 提唱者 Walter Crofton 卿의 「中間監獄」(intermediate prison)論에서 그 淵源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釋放前 特別處遇制度의 問題는 1960年 U.N. 犯罪會議에서 After-care와 함께 共同討議된 일까지 있고, 거기서 이것을 各國에서 活用하는 것을 積極으로 贊成하는 決議文이 採擇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制度가 採用되는 境遇에는 更生保護活動은 이를 中心으로 해서 行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釋放前 特別處遇制度를 最近에 크게 發達시키고 있는 美國과 英國의 例를 簡略히 紹介해 두기로 하겠다.

먼저 美國의 境遇를 보면 1950年에 Michigan州와 Colorado州에서는 刑務所로부터 獨逸 떨어진 곳에 獨立된 施設을 두는 것으로 하는 特別處遇制를 發展시키고 있다. 이 곳에서는 拘束을 最少限으로 하고, 名界의 人士들을 招聘해서 收容者들의 就業問題, 家庭問題 그 밖의 個人的인 問題를 相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期間은 1個月로 하고 就業이 안되면 더 머물러 있게 하고 있다⁽¹²⁾.

그러나 美國의 各州에서는 오늘날 Half-way House 또는 Community Residential Center

(11) F. Dawtry, "After-care and Supervision under Criminal Justice Act of 1948," in Radzinowicz and Turner(editors), *The Journal of Criminal Science*, Vol. 2, (1950), pp. 179~196.

(12) R. Cavan, *Criminology*, 3 ed., (1962), pp. 547 ff.

와 通稱되는 것이 여러 곳에 設置되어 出所를 準備하는 者들이 就業할 때까지 居住하게 하는 것이 近日에 크게 發達하고 있다 한다. 이 곳에서는 12~30名程度를 收容하고 家庭雰圍氣를 維持하면서 30日~90日程度 머무르게 하고 있다는데 그 位置는 雇傭이 容易하고 交通이 便利하며, 誘惑이 없는 市中 어느 곳을 擇하여 設置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完全한 釋放許可를 받은 者들이 아니기 때문에 刑務所에 所屬하고 있지만, 出入의 自由가 널리 許容되고 있다.

이와 같은 中間居住센터의 合理性을 說明하는 것을 들어보면 釋放後 2·3個月에 再犯率이 가장 높은 때 反하여, 또 이 期間에 更生意欲이 가장 旺盛하기 때문에 이러한 中間居住센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再犯豫防政策上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965年 現在 全國적으로 50餘個所 以上이 設置되어 있고 政府가 設置하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政府支援과 民間財團의 援助로 運營되고 있다고 한다⁽¹³⁾.

다음으로 英國에서는 「Pre-discharged Hostel」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1954年 以來 發達하기 始作하여 1962년에는 13個所 가량으로 擴大되었다고 한다. 이 Hostel은 刑務所의 一部에 따로 設置하는 것이 普通이라고 하나, 이곳으로 移動한 者들은 市中의 就業處로 나다니면서 돈 벌이를 始作하고 出所가 許容될 때에는 相當한 金額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곳에 收容하므로써 얻게 되는 利點으로는 受刑者들이 社會로 나갈 때 當面하게 되는 問題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며, 更生保護機構에서 하는 活動에 관한 知識을 提供하고 그 밖에 刑務所內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anyth들을 計議하고 이에 관한 觀念을 打破하는 것들이 列擧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收容하므로써 行刑經費가 크게 減輕된다는 點도 指摘되고 있다.

또 英國에서 發見되는 다른 한 가지 注目할 만한 것은 刑務所에 所屬하는 職員으로서 出所後 更生保護를 必要로 하는 受刑者를 찾고, 出所後 更生保護所로 送附할 資料를 蒐集하며 受刑者들의 個人問題·家庭問題를 相議하는 「Prison Welfare Officer」들이 各刑務所에 配置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떤 調查研究團에서는 이들과 更生保護役員들을 統合해서 刑務所 안팎의 活動을 協調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勸告를 하기도 하고 있다. Prison Welfare Officer 들을 After-care 機構에 統合시키자는 案이 有力한 것 같다⁽¹⁴⁾.

2. 國民의 協助

1960年의 U.N. 犯罪會議에서는 After-care에 관한 討議의 結果는 다음과 같은 決議文을 採擇한 바 있다.

(13) 1965年 U.N. 犯罪會議에 提出된 美國의 資料 *Trend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Correctional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hap. III.

(14) J.P. Martin, "After-care in Transition," in Grygier, Jones and Spencer, (editors), *Criminology in Transition*(1965) pp. 95--99.

「出所者の 成功的인 社會復歸(Rehabilitation)는 國民의 協助를 얻음으로써만 達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協助의 必要性에 관한 輿論啓發이 모든 報道機關을 利用하여 行하여져야 하며, 그리고 社會復歸에 있어서의 社會全體의 協調, 특히 政府・勞動組合 및 雇傭主의 協調를 얻기 爲한 諸方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新聞이 出所者에 對해 關心을 기울이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또한 要望되는 바이다.」(第六部會 結論과 勸告 第10條)

出所者로 하여금 就業處를 發見하게끔 斡旋하는 것은 更生保護活動에 있어서 決定的인 問題點을 이루는 것인데, 이 就業斡旋을 效果의으로 行하기 爲해서 各種 企業體의 雇傭主와 勞動者側의 理解와 協調가 또 얼마나 決定的인 價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詳述을 要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만 出所者들의 就業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輿論啓發에 관한 努力의 例를 한 가지 紹介하고자 한다.

이 例는 美國에서 1960年에 Washintgon州의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이 主管하여 「Governor's Conference on Employment of Offender」를 열어 輿論을 啓發한 實例이다.

이 會議에는 各種 公私機關・企業 및 勞動組合의 代表者 235名이 招請參與하였었고, 이때 라디오・텔레비전・新聞 등 모든 報道機關이 動員되었다. 그리고 討議 도중에 이 分野의 權威者들의 講演을 듣게 하면서 이를 동안 眞摯한 討議를 進行시켰다.

이 會議를 마친 후, 여기 參與했던 모든 사람들은 「犯罪者에 대한 更生保護 就業斡旋事業이 바로 우리 自身의 問題인 것을 비로소 切實히 깨달았노라」고 告白하였으며, 이 會議가 그들에게는 눈을 뜨게 한 것이었다고 吐露하였다 한다. 그리면서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積極的으로 이 事業이 一役을 맡겠다」고 자진하여 協調意欲을 表示하였다⁽¹⁵⁾.

이 같이 更生保護政策을 考慮함에 있어서 이 輿論啓發問題의 重要性을 우리는 깊이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指摘되어야 할 것은 一般民間社會事業機構를 活用하고 그들과 協調할 때 更生保護事業이 크게 發展하리라는 事實이다.

更生保護事業은 반드시 出所者들만을 專擔하는 機構에 의하여만 行하여질 것은 아니다. 더구나 政府가 이 事業을 獨占할 理由도 없고, 또 獨占해서는 도저히 滿足스러운 效果를 거둘 수도 없는 것이다. 可能하면 出所者를 一般福利事業體에 依賴하여 分散시키는 것이 더 效果의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出所者들의 保護를 專門으로 하는 民間篤志機構도 獎勵함이 必要하다. 例컨대 宗教團體에서 教會事業의 하나로 出所者의 更生保護事業을 벌리도록 하는 것은 크게 有益하며 期待할 만한 것이다.

(15) Bechtol, et 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and Industry for Employing Offenders," *The National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Journal*, Vol. 6, No. 2, (April, 1960), (犯罪者 就業問題 特輯) pp. 132-137.

이러한 民間篤志機構와의 協調가 必要함은 1960 年의 U.N. 犯罪會議의 다음과 같은 決議文, 즉

「After-care 의 諸方法을 組織化함에 있어서는 篤志社會事業家 또는 經驗과 訓練을 가진 專門社會事業家에 의하여 組織된 私設機構들의 協調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公的機構와 私設機構와의 共同活動의 必要性은 그제 強調되지 않으면 안된다.

篤志 After-care worker 의 役割의 重要性은 充分히 認定되어야 한다. 私設의 更生保護 組織體에 대하여 受刑者들과 適切하게 接觸할 機會를 許容하여 주어야 하며, 同時에 그들의 活動을 도울 수 있는 모든 必要한 情報도 提供해 주어야 한다」(同會議 第六部 結論과 勸告 第9條)

는 데서 強調되고 있다.

3. 調查研究의 實施

更生保護事業을 效率의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更生保護事業의 對象이 되는 出所者에 관한 實態를 善게 把握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이야기다. 出所者들 가운데 保護를 要求하는 사람이 얼마쯤이나 되어, 그들이 어떠한 內容과 어떠한 方法의 保護를 要求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更生保護事業에 動員될 수 있는 社會의 諸資源에 관한 畧마를 把握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 도저히 現實에 맞는 效果의인 更生保護政策이 樹立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問題에 관한 體系的인 調查研究가 크게 要索되는 것인데 우리 更生保護法에서도 更生保護令의 事業要目中の 하나로 「調査·研究」를 規定하고 있음은 이러한 意味에서 刮目할만한 事實이라 하겠다. 1960 年의 U.N. 犯罪會議에서도 다음과 같은 決議文이 採擇된 바 있다. 즉

「After-care 에 관한 諸問題와 國民의 出所者들에 대한 態度에 관한 調查研究計劃이 獎勵되고 또한 援助되어야 한다. 이러한 調查研究의 結果와 各分野學科의 研究에서 發見된 諸事實은 可能한 限 最大限으로 널리 普及되어야 하며, 特別히 刑의 種類와 拘禁의 期間을 決定하는 權限을 가진 法官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普及되어야 한다」(同會議 第六部 結論과 勸告 第11條).

四. 結 論

本稿에서 筆者는 更生保護事業은 單純히 慈善의 一種인 것으로 생각하신 안되며, 國家的인 公共事業으로 理解되지 않으면 안됨을 力說하였다. 즉 更生保護制度는 再犯의 危險性이 濃厚한 出所者들에 대하여 그들이 正常的인 社會生活의 軌道에 오를 수 있도록 精神的·物質的援助를 提供해 줌으로써 彼들을 착한 社會人으로 이끌어 주고, 그들의 再犯으로부터

社會一般을 保護하고자 하는 刑事政策的인 制度로서 刑事政策上 必要不可缺한 制度임을 強調하였다.

그리고 이 更生保護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實踐上의 key-point 를 들어 一般的인 設明을 하여 보았다.

刑事政策上 가장 深刻한 問題는 亦是 出所者의 再犯問題인데, 更生保護制度는 이 問題를 解決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從來 이에 관한 關心이 너무나 消極的이었음은 참으로 遺憾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 刑事學界에서 이 更生保護制度의 效果的인 運用의 問題에 깊은 關心과 研究 및 實踐이 있기를 바라면서 本稿를 맺는다.

Rehabilitation of the Discharged Prisoners in Korea: Its Ideal and Reality

by Dr. Ki Doo Kim*

Résumé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arising out of the execution of policies prescribed by 1961 Rehabilitation Law(Law No. 730). It is accepted that, for a discharged prisoner, the first two or three months after release are the most crucial period for his return to the community. Thus "after-care" of the discharged prisoner during this period must go beyond the level of providing him with his survival needs.

Without going into the analysis of the more fundamental factors that account for the rise in the number of criminals in our society, this paper points out two factors with regard to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and attempts to make some policy recommendations.

The first can be called "community lag." It is true in any society that the community in general tends to be apathetic to, or even hostile, toward "ex-convicts." In our society where the existence of a vast pool of unemployed persons is one of the permanent features of the social proces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 recently discharged prisoner to find a job even to maintain himself at a subsistence level.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enlightening the public, especially employers and labor unions, and recommends various strategies for the purpose. The next point is related to the inner life of the recently discharged prisoner who has been affected by his imprisonment. Due to the gap between what social life is and what he has imagined it would be during his monotonous prison life, he must undergo a morbid ego identity crisis. His anxiety level and doubts about the worth of the self increases, and often sees himself as a "misfit" in society. Here, this paper criticizes the conventional criminal policies which concentrate national resources mainly upon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during the period of their service in prison. In order to set up the bridge between prison and the community, after-care workers must penetrate into prison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s of those who are to be released. We are aware of the fact that the sooner the prisoner starts on a plan of readjustment, the more chance there is it will succeed.

*Professor of Law,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troduces various approaches to the problem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for instance, "Intermediate Prison," "Halfway House," "Community Residential Center," or "Pre-discharged Hostel," and so on.

As in many of the other intellectual researches in our society, this paper cannot go down to the level of a more empirical analysis.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paper will serve as a starting-point for further inquiry into the one of the most vital challenges which our criminal policy-makers face today.